
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(정춘생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6735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2. 11.

발 의 자 : 정춘생 · 최민희 · 이기현
문대림 · 김선민 · 강경숙
서왕진 · 이해민 · 백선희
신장식 · 최혁진 · 박은정
김준형 · 차규근 · 김재원
황운하 의원(16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이행하고, 업무로 인한 유해·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최근 배달 플랫폼 기반 기업에서 매년 수천 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배달 라이더를 위한 근로감독이나 산업안전 감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.

특히 배달앱 알고리즘은 주행 중 배달 라이더에게 스마트폰 조작(배달 진행 상황, 어려움 여부 등 질문 메시지에 대한 응답)을 반복적으로 요구하여 답변이 늦어지는 경우 고객 등급·평점, 일감 배정 등에 불이익을 받도록 설계되어 있어 과속 및 위험 운전으로 내몰고 있다

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사업주로 하여금 일감 배정, 등급·평점, 가격 결정 등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·배달 등을 하는 사람의 노무 제공 방식이나 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 또는 자동화 의사결정시스템(이하 “자동화 시스템”이라 함)의 설계 및 운영에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, 위험성 평가의 대상에 자동화 시스템의 설계 및 운영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배달 라이더의 산업재해를 예방하려는 것임(안 제5조제3항 신설 및 제36조).
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자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”를 “자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, 제6조 및 제36조에서 같다”로, “사람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”를 “사람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, 제6조 및 제36조에서 같다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사업주는 근로자의 노무 제공 방식이나 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 또는 자동화 의사결정시스템(이하 “자동화 시스템”이라 한다)을 설계·운영하는 경우에도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36조제1항 중 “근로자의 작업행동”을 “근로자의 작업행동, 자동화 시스템의 설계 및 운영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사업주 등의 의무) ① 사업주(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·배달 등을 중개하는 <u>자</u> 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(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·배달 등을 하는 <u>사람</u> 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)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·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라야 한다.	제5조(사업주 등의 의무) ① 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자를 포함한다. 이</u> <u>하 이 조, 제6조 및 제36조에서</u> <u>같다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사람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,</u> <u>제6조 및 제36조에서 같다</u> ---- ----- ----- -----.
1. ~ 3. (생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<u>③ 사업주는 근로자의 노무 제공 방식이나 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 또는 자동화 의사결정</u>

